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한규·모경종·강경숙

안호영 · 서미화 · 박민규

서영석 · 정준호 · 위성곤

전현희 • 이성윤 • 위성락

백승아 • 유호중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(이하 '국무위원 등'이라 함)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.

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122조의4 신

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에 제1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2조의4(국무위원 등의 출석) ① 제121조, 제122조의3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회의 중이석하기 위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 또는 제121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무위원 등의 이석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2조의4(국무위원 등의 출석)
	① 제121조, 제122조의3에 따라
	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
	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
	원이 회의 중 이석하기 위하여
	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
	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
	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
	<u>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
	②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
	부위원이 제1항 또는 제121조
	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
	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
	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
	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
	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